

4. 덴마크(Denmark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891년(노령), 1921년(장애)
- 현행법 : 2014(ATP연금), 2017년(장애연금과 기초연금), 2018(사회서비스)

2. 제도형태

- 기초연금,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기초연금 : 덴마크 거주자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2003년 이전 지급된 장애연금, 현금 질병 출산 급여, 실업급여, 사회부조급여 수급자 포함한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사전에 최소 3년 동안 가입된 자로 비급여자 또는 자영자, 2003년 이후 지급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조기퇴직급여 수급자
 - 적용제외 : 일주일에 9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기초연금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
 - 근로시간에 따라 월 31.55부터 94.65 크로네까지 납부.
 - 질병, 출산, 실업 및 특정 직업훈련급여 수급자는 보험료 2중 납부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또는 분기로 납부
- 자영자
 - 기초연금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 : 월 284 크로네
 - 보험료는 분기로 납부
- 사용자
 - 기초연금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 : 근로시간에 따라 월 63.10부터 189.35 크로네까지 납부
 - 보험료는 분기로 납부

○ 정 부

- 기초연금제도 : 비용 전액부담
 - 보험료는 월 또는 분기로 납부
- 사회보험 : 없음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기초연금(소득조사)
 - 15세부터 정상퇴직연령(외국인은 연금 수급연령 직전 최종 5년을 포함)까지 최소 40년의 거주기간을 가진 65세(2019년부터 2022년까지 67세로 점진 상향되고 2030년까지 68세로 상향; 2035년부터는 기대수명에 기초해 상향)
 - 연금은 근로소득조사 기초연금과 소득조사 보충연금으로 구성
 - 근로소득조사 : 수급자의 연간소득이 322,500 크로네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철회
 - 소득조사 : 연소득(배우자 동거파트너의 소득 포함)이 71,200크로네(독신) 혹은 142,800크로네(커플)를 초과하면 보충연금 철회. 수급자의 소득중 60,000크로네까지는 포함안됨; 배우자나 동거파트너가 연금수급자격이 없으면 그들 소득중 222,800크로나까지는 포함되지 않음.
 - 계속 고용 가능
 - 부분 연금 : 15세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 최소 3년 이상 40년 미만의 거주기간이 있는 자에게는 감액연금 지급. 특정 외국 국적자는 퇴직직전 5년을 포함해 최소 10년의 거주기간 필요
 - 연기연금 : 연금은 정상 퇴직 연령후 10년까지 연기가 가능. 연간 최소 750시간을 일해야 함
 - 노령보충급여(자산조사): 궁핍한 연금수령자에게 지급
 - 자산조사 : 수급자의 유동자산은 86,000크로나 미만이어야 함. 연소득(배우자나 동거파트너의 소득 포함)이 20,500크로나(독신) 혹은 40,600크로나(커플)을 초과시 보충급여 철회
 - 추가보조금 : 노령연금 수급자는 의료비, 난방비, 주거비, 기타 생활비 지출에 유용한 부가 자산조사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노령연금(ATP, 사회보험)
 - 65세 도달(2019년부터 2022년까지 67세, 2030년까지 68세로 점진 상향 예정)
 - 완전연금을 수급하려면 제도가 도입된 1964년부터(이후인 경우 16세부터)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납부 필요
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 연령 후 10년까지 연기가 가능

-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기초연금, 소득조사)
 - 심각한 노동능력 상실(재활이나 다른 조치로 개선될 수 없는) 판정, 18세 이상이나 정상 퇴직연령에 이르지 않아야 함. 자신의 생계를 근로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야 함. 15세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 최소 40년의 거주기간 필요. 15세부터 지급 판정일까지 거주기간의 최소 80%(특정외국인의 경우는 장애 발생 전 5년 포함) 거주필요.
 - 소득조사 : 연소득(배우자나 동거파트너의 소득 포함)이 77,300크로나(독신) 혹은 122,500크로나(결혼, 동거 시)를 초과 시 장애연금 철회
 - 부분 연금 : 최소 3년 이상 완전연금 요건 기간 미만의 거주기간이 있는 자에게는 감액연금 지급. 특정 외국 국적자는 퇴직직전 5년을 포함해 최소 10년의 거주기간 필요
 - 시니어 장애연금(소득조사) : 25년간 주당 최소 27시간 근로 필요(특정상황에서는 완화), 신체적인 여건이나 업무 관련 건강문제로 근로를 중단 했고 정상 퇴직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함
 - 의료 판정후 지자체의 비의료 직원이 업무능력 상실정도를 판정, 수급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면 의료 재판정 필요
 - 장애 보충급여 : 판정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연 6,408크로네(월 534)를 초과하는 추가비용을 보전기 위해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시점에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
 - 장애연금은 해외 지급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기초연금)
 - 배우자 또는 동거파트너(이성, 동성)가 사망하고 기초 노령연금 혹은 장애 연금을 받았을 때 지급
 - 유족수당(소득조사) : 최소 3년 동안 사망자와 같이 살았던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(동성 파트너 포함)에게 지급
 - 18세 미만 고아는 가족수당관련 급여 수급 가능
 - 소득조사 :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소득이 241,636 크로네를 초과할 경우 감액된 급여 지급. 연간 소득이 377,554 크로네 초과 시 급여 미지급
- 유족연금(ATP, 사회보험)
 - 신규 급여 : 사망자가 사망당시 70세 미만이고 2002년 이후 최소 2년의

보험료 납부를 한 경우, 수급자격 유족에게 지급

- 사망자와 최소 2년간 동거한 배우자, 동거파트너(동성포함), 특정 이혼 배우자, 21세 미만 자녀
- 구 급여 : 사망 당시 사망자가 67세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사회보험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격 유족에게 지급
- 수급자격유족 : 사망자와 최소 2년간 동거한 배우자, 동성파트너, 특정 이혼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
- 장례 보조금(자산조사) : 사망자의 장례비 총당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기초연금(근로, 소득 활동에 의한 수입조사)
 - 연금은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 구성
 - 기초연금(소득조사) : 월 6,237크로나까지 지급
 - 근로소득조사 : 기초연금은 322,500크로나가 넘는 수급자 연소득의 30%까지 감액, 연금수급권은 최소 322,500크로나의 연소득이 있으면 박탈
 - 보충수당(소득조사) : 독신 월 6,728크로네까지, 혼인 중이거나 동거하는 수급자는 월 3,333 크로네까지 지급
 - 소득조사 : 보충연금은 연소득(배우자, 동거 파트너 소득 포함)이 71,200 크로네 이상이면 연소득의 30.9%(독신)까지 감액. 142,800 크로네 이상이면 연소득의 32%까지 감액(노령연금미수급자와 혼인 또는 동거 시), 142,800크로네 이상이면 연소득의 16%까지 감액(노령연금 수급자와 혼인 혹은 동거 시) (어떤 특정 소득은 소득조사에 불포함). 보충연금은 연 소득 332,500 크로네(독신), 267,800크로네(노령연금 미수급자와 혼인 또는 동거 시) 또는 392,900 크로네(노령연금 수급자와 결혼 혹은 동거 시)이상이면 박탈.
 - 부분연금 : 연금(기초 및 보충)은 40년 미만 거주기간 매 1년당 2.5%씩 감액
 - 연기연금 : 연금(기초 및 보충)은 정상 퇴직 연령 후 연기하는 매 1개월 단위로 증가. 연금을 1년동안 연기할 때의 증액분은 연금 청구 시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연기기간의 비율에 기초
 - 노령 보충급여(자산조사) : 연 17,200까지 지급
 - 자산조사 : 노령 보충 급여는 연소득(배우자, 동거 파트너 소득 포함)이 독신의 경우 20,500크로네 이상, 커플의 경우 40,600크로네 이상이면 감액. 보충급여는 연금은 연소득 72,200 크로네(독신),

142,800크로네(커플)이상이면 박탈.

- 급여조정 : 급여는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이력에 따라 계산. 2,500 크로네 미만의 연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
 - 연간 최고 연금액은 23,500 크로네
 - 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후 매 연기년도마다 5%씩 증가
 - 급여액 조정 : 급여는 제도의 재정에 따라 조정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기초, 소득조사)
 - 연금은 18,642크로네(독신) 또는 15,846크로네(기혼자 또는 동거인)까지 지급
 - 소득조사 : 장애연금은 연소득(배우자 혹은 동거파트너의 소득포함)이 독신자의 경우 77,300 크로네, 기혼자나 동거인의 경우 122,500크로네를 초과하면 연소득의 30.9%까지 감액
 - 부분연금 : 연금은 완전연금요건에 필요한 기간보다 적은 매년도의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
 - 시니어장애연금(소득조사) :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산정되고 동일한 소득 조사 대상
 - 장애보충급여 : 월 최소 1,000크로네 지급
 - 급여조정 : 임금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기초)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유족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3개월까지 지급
 - 급여조정 : 임금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유족수당(소득조사) : 일시금으로 14,677 크로네까지 지급
 - 소득조사 :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연간 소득이 241,636크로네 초과 시 감액 지급. 377,554 크로네 초과 시 급여 중단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2002년 이후 납부 보험료에는 신규 급여 또는 2002년 이전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지급. 이중 보다 큰 금액 지급
 - 신규급여 : 50,000크로네까지의 일시금을 자격 있는 각 유족에게 지급. 급여액은 사망자가 사망당시 66세에서 69세사이라면 사망자의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
 - 기존급여 : 자격 있는 각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. 급여액은 사망자의 출생일과

다른 요소에 따라 다름

- 장례 보조금(자산조사) : 11,000크로네까지의 일시금 지급; 유족이 18세 미만이면 9,200크로네, 사망자가 1957 4월 1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1,050크로네
 - 급여조정 : 급여는 매년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

7.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복지통합부(Ministry of Employment(- <http://bm.dk>)
 - 기초연금 전반적 감독 및 전국적 관리운영

- 노동시장보충연금기관(Labor-Market Supplementary Pension Institution)
 - <http://www.atp.dk>
 - 양자 이사회에 의해 대표되는 독립기관으로 사회보험 제도 보험료 관리 및 징수

- 덴마크재정감독청(Dan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)
 - <http://www.finanstilsynet.dk>
 - 기초연금 감독

<2018년 ISSA 자료>